

2026년도 중동 특화 긴급 물류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수정공고

중동 지역 정세 불안 및 글로벌 물류 차질로 인해 우리 수출 중소기업 물류 애로가 심화됨에 따라 중동 수출기업의 국제 운송 부담 완화 및 수출 지속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「2026년도 중동 특화 긴급 물류바우처」 참여 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3 월 18 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1. 사업개요

사업목적

- 중동 지역 분쟁 및 글로벌 물류 불안정으로 인한 운임상승, 지연, 추가 할증료 발생 등 물류 애로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활동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긴급 물류 지원

모집규모 : 약 000 개사 내외

사업기간 : '26. 2. 1 ~ 7. 31 (6개월)

신청기간 : 26년 3월 20일 ~ 예산 소진 시

- 본 사업은 긴급 물류 대응을 위한 **패스트트랙 방식으로** 운영되며, 현장평가 없이 최소 요건만 확인하여 **접수 후 약 3~4일 내에 지원대상 여부를** 안내할 예정입니다.
- 선착순 방식으로 지원되며, **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** 될 수 있습니다.
- * 참여기업이 협약을 체결하여 금액 및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**협약기간 중 사업 예산이 소진될 경우 정산이 제한될 수** 있습니다.

주무부처 / 운영기관 : 중소기업부 / 중소기업진흥공단

□ 신청방법 : 수출바우처 누리집(www.exportvoucher.com) 상시 신청

○ 신청 진행을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공인인증서 활용 필요

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

- * 사업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(수출바우처 시스템용)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,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,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
- *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,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

□ 사업내용

○ (지원내용) 물류바우처를 활용, 수출바우처 시스템 內 “국제운송” 서비스 메뉴를 이용하여 해상 등 다양한 물류서비스 이용 가능

【 주요 물류서비스 지원 내용 】

구 분	세부 내용	비고
국제운송료 및 보험료	해상·항공 등으로 이동하는 운임 및 보험료	인코텀즈 C, D조건에 한하여 지원
샘플 운송료	실제 수출을 위한 상품 샘플이 운송되는 경우	
해외 내륙 운송료	컨테이너 트럭 운송 → 1차 도착지에서 목적지 이동	
국제특송	우체국 및 국제특송 (FEDEX, DHL, UPS 등) 이용 비용	
종합 물류 대행 서비스	온라인 플랫폼 등이 직접 제공하는 국내외 종합 물류 대행 서비스	
선적 전 검사료	수출품 선적 전에 공인 검사업체로부터 발급받은 품질 인증 비용	
국제운송 부대비용	물류 반송 비용, 전쟁위험 할증료, 지체료, 대체 목적지 우회 운송비	

* 상기 주요 물류 서비스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, 세부 지원항목 및 정산 기준은 추후 공지되는 정산가이드를 참고

○ (지원방식) 참여기업이 국제운송 등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고, 물류비를 先집행한 후 지출 증빙을 제출하면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원

- 기업당 최대 15백만원 이내 지원
- 정부지원금 70%, 기업 자부담금 30% 적용
- * 수출액 및 매출액 기준 미적용

2. 지원요건 및 내용

[실적 인정 중동 21개국]

- ① 아랍에미리트, ② 카타르, ③ 오만, ④ 바레인, ⑤ 쿠웨이트, ⑥ 사우디아라비아, ⑦ 요르단, ⑧ 이란, ⑨ 이라크, ⑩ 레바논, ⑪ 팔레스타인, ⑫ 시리아, ⑬ 이스라엘, ⑭ 예멘, ⑮ 리비아, ⑯ 모로코, ⑰ 수단, ⑱ 알제리, ⑲ 이집트, ⑳ 튀니지, ㉑ 모리타니

□ 지원대상 :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 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

○ 본 공고는 중동 지역 물류 애로 대응을 위해 2개 트랙으로 구분 운영

구 분	세부요건	비고
[트랙 1]	<p>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</p> <p>① '26년 2월 이 후 중동지역 국가로 물류 발송 기업</p> <p>② '26년 이 후 중동지역으로 수출계약 체결 기업</p>	신청접수 필요
[트랙 2]	<p>'26년도 일반 수출bauer 1차 선정기업으로 최근 1년 (25.1~26.2) 중동지역 직수출 실적 보유 기업</p> <p>* 중기부 공고번호 : 2025-641호</p>	추후 수요조사

신청 제외 대상

- ◆ 휴·폐업했거나 국세·지방세 체납중인 경우
- ◆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 - * 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
- ◆ 보조금법 위반 등 부정행위로 인해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
- ◆ 중기부,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수출bauer 참여기업도 본 사업 신청 및 선정 가능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및 선정 제한
 - * 26년 중기부 수출bauer 사업 참여기업 중 물류비 한도 증액을 지원받은 기업
 - 동일 물류비 건에 대해 타 수출지원사업 또는 유사 사업에서 중복 정산 사실이 확인될 경우, 보조금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조치 적용

- ◆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이거나 부정행위 등으로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
- ◆ 물류 바우처 신청기업과 **특수관계에 있는 기업(필요시, 현장 실태조사)**

[특수관계기업의 정의]

-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조(정의) 제22호, 제23호에 따름
 [예] A기업과 B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, A기업 대표자의 가족 등이 운영하는 B기업 등

- ◆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는 사업기간 내 동시 신청 및 선정 불가
- ◆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◆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

업종 분류	품목코드	수출바우처사업 지원제외 업종
제조업	33402 中	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	33409 中	도박게임장비 등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도매 및 소매업	46102 中	담배 중개업
	46~47 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, 사행성,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, 주류, 담배 소매업
	46331, 3	주류, 담배 도매업
숙박 및 음식점업	5621	주점업
정보통신업	58 中	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임대업	76390 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9124	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
□ (필수) 신청서류

※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

연번	서식명	내용
①	중동지역 국가로 수출 물류 발송기업 (물류 발송 증빙서류)	B/L(해상운송 선하증권), AWB(항공화물운송장) 등 중동 지역으로 운송여부(목적지 국가 일자)를 증빙 가능한 서류
	중동지역 수출 계약기업 (수출계약 증빙서류)	중동 지역으로 수출하는 계약서 * 계약당사자, 금액, 품목, 수량 등 명시 필요 - 단, MOU, 이메일 문의 등은 인정 불가
②	사업신청서	홈페이지에서 작성
③	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	홈페이지에서 작성
④	사업자등록증명원	중소기업지원플랫폼 제출
⑤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*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	* 사용자 매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 첨부
⑥	중소기업확인서 *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	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(sminfo.mss.go.kr) 발급

□ 신청 접수 및 서류제출 안내 ※ 반드시 숙지 후 제출

- (①~②) 사업신청서, 신용조회-정보제공 동의서 :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 활용(별도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불요)
- (③~④) 민원증명 서류 : 「중소기업지원플랫폼」을 통해 간편 제출
 - * 중소기업지원플랫폼(https://m.one-click.co.kr/#/kosmes_export) : 각종 민원증명 서류 발급 및 제출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
 - ** 사용자 매뉴얼은 수출바우처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첨부되어 있으며,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서류제출이 기한 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
- (⑤) 중소기업확인서 :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에서 발급
- (⑥) 중동지역 수출 물류 발송 증빙서류 : 중동지역으로의 수출물류 발송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로서 B/L, AWB 등 운송서류(목적지, 국가, 운송정보 확인 가능한 서류)
- (⑦) 중동지역 수출 계약기업 : 중동 지역 바이어와의 수출 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로서 계약 당사자, 금액, 품목, 수량, 국가 등 확인이 가능한 서류

3. 세부 지원내용

□ 지원 항목

- 수출자가 부담하는 인코텀즈 C 및 D조건에 해당하는 국제운송비
 - 인코텀즈 E조건(EXW) 및 F조건(FCA, FAS, FOB)은 수출자가 국제 운송비를 부담하지 않으므로, 지원 불가
- 기업이 사업 기간 내 발생한 물류비용을 선 집행 완료한 후, 지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경우

[정산 가능/불가 항목]

구분	세부내용
필수 충족요건	- 운송 물품이 수출품 또는 샘플(유,무상) 운송인 경우 지원가능 -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거래조건 C조건(CFR-CIF-CPT-CIP), D조건(DAP-DPU-DDP)에 한해 지원
정산 가능항목	① 항공·해상운송료 ② 보험료 ③ 국제복합운송료(기항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국제운송) ④ 현지 내륙운송료(현지 내륙운송료는 인코텀즈 D조건에 한하여 지원) ⑤ 추가할증료 : 유류할증료, 저유황할증료, 보안할증료, 성수기할증료 ⑥ 물류서비스 : 종합물류대행서비스(풀필먼트), 선적전검사, 창고임대료 ⑦ 국제운송 부대비용 : 반송비용, 전쟁위험할증료, 지체료 등 ⑧ 정산검수 신청가능 물류비 = ①+②+③+④+⑤+⑥+⑦ <u>(참고) 최종정산예정금액 = ⑧ × 70%</u> * 우체국 특송 서비스(EMS, K-packet, 기업화물 서비스 등)도 정산 가능
정산 불가항목 예시	-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지 않는 인코텀즈 E 및 F조건 수출거래 - 현지 통관료 : 화물의 관할 세관 신고시 발생하는 통관 수수료 - 국내 운임 및 취급수수료(위험물 취급수수료 등) - 수출 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 - 관세, 수입세 등 국내 및 도착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일체 - 각종 문서 송달비용 - 최초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간(해외→해외) 운송료 - 급행료 등 불법적 행위에 동원되는 비용 일체 - 기타 증빙이 부실한 지출 항목

- 상기 정산 불가 항목에 열거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정산 가능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는 정산 불가함
- 세부 정산 기준 및 관련 서류는 추가로 공지되는 정산가이드 참고

□ 지원 한도

- 참여기업별 발생한 물류비 최대 15백만원 지원 (보조금 10.5백만원, 자부담 4.5백만원)
-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 70%, 기업자부담금 30% 적용
 - * 단,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기업자 부담금은 별도로 납입할 필요가 없으며, 정산 인정 금액의 70%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만 지급
- 정산 가능 물류비 항목은 합산하여 신청 가능하나, 총 합산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건부터 신청 가능

< 합산 신청 가능 사례 >

구분		한 회차 물류비 집행액	신청 가능금액	지원 가능금액
지원 가능	사례1	200만원	200만원	140만원
	사례2	50만원+30만원+10만원+10만원	100만원	70만원
	사례3	100만원+100만원+50만원+10만원+20만원	280만원	196만원
지원 불가	사례1	10만원+20만원+50만원+3만원+2만원	85만원	총 합산금액 100만원미만 신청불가
	사례2	80만원(인코텀즈 D) + 20만원(인코텀즈 F → 신청불가)	80만원	

4. 참여기업 신청 및 절차

* 하기 내용은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

□ 신청 및 지원 절차

▪ **[최초신청]** ① 사업신청 → ② 지원대상 확인 및 선정 통보 → ③ 전자협약체결 및 바우처 발급 → ④ 정산신청 → ⑤ 정산금 지급 순

▪ **[기선정기업]** ④ 정산신청 → ⑤ 정산금 지급 순

※ **선정 및 협약 체결 이후라도 결격요건 확인 시, 선정 취소 가능**

- 단, 결격요건 해소 이후 재신청 가능

① 사업 신청 (참여기업)

- 수출바우처 누리집*을 통해 온라인 상시 신청 (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 업로드)

* 신청 페이지 : 수출바우처 누리집(www.exportvoucher.com)

② 지원대상 확인 및 선정 통보 (운영기관)

- 신청 제외 대상 여부 및 제출 서류 구비 여부 등 최소 요건을 확인하여,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

- 접수 후 약 3~4일 내 지원대상 여부를 홈페이지 및 알림톡,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 안내 예정

③ 전자협약체결 및 바우처 발급 (참여기업, 운영기관)

-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참여기업이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전자협약체결 및 바우처 발급

④ 정산 신청 (참여기업)

- 전자협약체결 완료 기업은 물류비 지출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수출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정산 신청

* 물류비 세부내역서는 신청일 기준 집행이 완료된 내역만 작성하여야 하며, 세부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정산서류는 정산불가

⑤ 정산금 지급 (운영기관)

- 운영기관이 제출한 정산서류의 적정성 검토 후 정산금 지급

* 정산가능(서류보완 포함) 기간은 정해진 사업기간까지이며, 정산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기간 초과, 예산 소진 등의 경우는 정산불가

5. 참여 유의사항

- ◆ 정부보조금 지급은 '수출바우처'와 같이 '운영기관과의 전자협약 체결' 및 '정산 신청'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.
- ◆ 신청하는 물류비 건에 대해 타 중앙정부, 공공기관,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건은 정산 신청 불가하며, 향후 중복수급 적발시 보조금 환수 및 환수액의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,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 예정입니다.
- ◆ 정산 신청시, 사업 운영기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, 서비스 실제 진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산 불가합니다.
- ◆ 물류비 세부내역서 작성 시 정산 신청일 기준 집행 완료된 내역만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필요합니다.
- ◆ 사업 신청시 필수서류 미제출, 지원 자격 요건 사항,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된 경우 등이 있을 경우 별도 보완 요청없이 자동탈락 처리 됩니다.
- ◆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자격요건 해당 등으로 탈락한 경우,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추후 별도신청이 가능합니다.

6. 문의처

세부사업		담당기관 / 부서	전화번호
사업	온라인 문의	홈페이지 내 '온라인 문의' 이용 * 커뮤니티>문의하기>문의유형 : "물류 바우처" 선택 후 작성	
	전화 문의	중기부 수출바우처 콜센터	055-752-8580
시스템	시스템 이용 관련	홈페이지 내 '온라인 문의' 이용 * 커뮤니티>문의하기>문의유형: "시스템" 선택 후 작성	
	중소기업지원 플랫폼	https://m.one-click.co.kr/#/kosmes_export 02-3771-1050	